

○ 제 목 : 제34차 이사회  
○ 일 시 : 2014.6.26(목)19:00  
○ 장 소 : 황장군 상인점

##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 5. 부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수경기억학교,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 비슬노인복지센터  
변경사업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의결 건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수경기억학교,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 변경사업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의결 건을 상정하다.
  - 안대영 소장이 회의 자료를 토대로 수경기억학교 제1차 변경사업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다.
  - 박태영 이사가 수경기억학교 추경 이유에 대하여 묻다.
  - 안대영소장이 수입부분에서 유료이용자 조기 확보에 따른 이용자 이용수입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에는 직원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 계수 조정과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예산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비 구입에도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김성수이사가 이용 인원이 어떻게 되어 수입이 증가한 것인가 라고 묻다.
  - 안대영소장이 40명 정원에 현 24명이며 이중 유료이용자가 11명으로 유료 이용자 수가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김덕진 이사가 홍보활동을 열심히 잘한 덕분인거 같다고 말하다.
  - 이어서 박임순원장이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 제2차 변경사업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 김성수 이사가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의 1차 추경이 지난 2월에 이루어 졌음에도 2차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다.
  - 박임순 원장이 예산에 준하여 사업을 잘 수행해 왔으나, 사업평가를 통해 재가지원서비스의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무비 및 기타운영비, 홍보사업비 등이 증가하게 되어 2차 추경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김덕진 이사가 예산을 계획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이어서 이칠선과장이 비슬노인복지센터 제2차 변경사업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 김덕진 이시가 비슬노인복지센터 추경이유에 대하여 묻다.
  - 이칠선 과장이 사무실이전으로 인한 시설유지비 증가와 폭염대비 물품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긴급 사업비가 추가되었음을 설명하다.
  - 김성수 이사가 시설유지비 증가로 인한 대상자지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반기로 동의하다.
  - 박태영 이사가 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이야기하며,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의결여부에 대하여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이의 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 참석이사 4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 제2호 의안 : 법인 및 비슬원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의결 건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법인 및 비슬원 운영 규정개정(안) 건을 상정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박임순 원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 박임순 원장이 법인 인사규정과 시설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을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 김덕진 이사가 법인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개정 이유에 대해 묻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우리 법인 직원의 경력이 대체로 미미하고 운영 시설이 적으로 직급과 직책에 따른 인사가 적재적소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직급과 직책을 분리한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김성수 이사가 비슬원 조직규정과 운영규정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묻다.
- 박임순 원장이 시설통합에 따른 정원변경과 조직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김성수 이사가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 진거 같다면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덕진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의결여부에 대하여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이의 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 참석이사 4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 제3호 의안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원 가입 건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3호 의안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원 가입 건을 상정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가입은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 해서 신청해야 됨을 설명을 하다.
- 김성수 이사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가 창립이 되었는지를 묻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창립이 되었지만, 한국사회복 지법인협회는 창립에 필요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박태영 이사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에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가를 묻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공문에 의하면 법인 대표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안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김덕진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성수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의결여부에 대하여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이의 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예” 라고 답하다.
- 참석이사 4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 제4호 의안 : 법인 감사 선임(안) 심의 · 의결 건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4호 의안인 법인 감사의 선임(안) 의결 건을 상정하다.
- 김영경 사회복지사가 법인 유정철 감사님의 임기만료로 인해 감사를 재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리다.
- 김성수 이사가 유정철감사의 재선임에 문제가 없다면 중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김영경 사회복지사가 재선임에 문제가 없음을 말하다
- 김덕진 이사가 유정철감사님은 사회복지현장의 오랜 경험으로 사회복지업무 전반의 전문가로써 우리 법인의 감사로 계속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중임으로 재선임하기를 동의하다.
- 박태영 이사가 이에 재청을 하다
- 김상근대표이사가 의결여부에 대하여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이의 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예” 라고 답하다.
- 참석이사 4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 기타의안

- 김상근 대표이사가 기타의안이 없는지를 묻고 기타의안이 없음을 확인하다.

### 6. 폐회

- 김성수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 박태영 이사가 재청하다.
- 참석이사 4명의 찬성으로 김상근 대표이사가 21:00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과 같이 제34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4. 6. 26.



##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근



이사 김덕진



이사 김성수



이사 박태영

